『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계획

관련근거 : 감사실-1875('16.8.9) 청탁금지법 등 교육 계획 보고

□ 개 요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후반기 원내 청렴교육 계획임

□ 전반기 실시내용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1회 (전부서)

※ 권익위 권고사항 : 년간 2회

○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 1회 (전부서)

□ 후반기 교육계획

○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 교육자료 : 붙임2. 참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신규 교육항목 (권익위 권고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교육자료 : 붙임3. 참조
- 복지 보조금 신고 제도 ☞ 교육자료 : 붙임4. 참조
- 리플릿 2종(부패통제시스템, 부당지시 대응) ☞ 교육자료 : 붙임5. 참조
- 임직원 행동강령 ☞ 교육자료 : 붙임6. 참조

○ 교육일정

월	주	교육 대상자
8월	3주	본원지역
9월	1주	창원센터(지역 벤처센터 포함)
	2주	부산센터(지역 벤처센터 포함)
	4주	대전센터(지역 벤처센터 포함)
10월	1주	대구센터(지역 벤처센터 포함)
	2주	서울지역(서울분원, 신뢰성 시험센터 포함)
	3주	본원지역 근무자(사천센터 포함)
	4주	1차 교육 불참자 교육

□ 기대효과

○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직원의 불안감 해소

○ 청렴의식 제고로 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

※ 붙임 : 전반기 교육실적 및 청렴교육 자료. 끝.